

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재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50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16.

발 의 자 : 이재정 · 김태년 · 박홍배
박희승 · 최혁진 · 정준호
민병덕 · 서미화 · 조정식
차지호 · 이재강 · 문정복
임호선 · 이용선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그런데 북한주민의 인권 향상은 남한 당국과 북한 당국의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할 수 있어, 이 내용을 법 제명과 목적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또한, 현행법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위원과 북한인권재단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, 부적합한 인사가 위원 또는 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동 법의 제명을 “북한인권법”에서 “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”로 변경하고, 남북인권대화 외에도 남북인권협력을 위한 사업 및 인도

적 지원 사업과 개발협력을 추진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며, 북한 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위원과 북한인권재단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1조, 제7조 및 제12조의2 신설 등).

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북한인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북한인권법”을 “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”를 “남한과 북한의 협력을 바탕으로”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중 “남북인권대화의”를 “남북인권협력사업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남북인권 대화를”를 “남북인권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(이하 이 조에서 “남북인권협력사업”이라 한다)을”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남북인권대화”를 “남북인권협력사업 중 남북인권대화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그 밖에 남북인권대화의”를 “남북인권협력사업의”로 한다.

1. 남북인권대화
2. 남북인권협력 관련 남북 공동 조사·연구
3. 그 밖에 남북인권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제10조의 제목 중 “북한인권재단”을 “남북인권협력재단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북한인권 실태”를 “남북인권협력의 추진 실태”로,

“북한인권증진”을 “남북인권협력”으로, “북한인권재단”을 “남북인권협력재단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북한인권증진”을 “남북인권협력”으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중 “북한인권 실태”를 “남북인권협력의 추진 실태”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중 “남북인권대화”를 “남북인권협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”을 “인도적 지원, 개발협력 등 남북인권협력”으로 하며, 같은 호 가목 중 “인도적 지원 수요”를 “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 수요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대북 인도적 지원”을 “대북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”으로 한다.

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 및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2.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재단의 임원의 직에서 해촉 또는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3. 이 법 또는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, 「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」, 「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②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재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

그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재단의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

제12조의3(벌금형의 분리 선고) 「형법」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위원 및 재단의 임원에게 제12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(競合犯)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거나 재단의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북한인권법</u>	<u>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</u>
제1조(목적) 이 법은 <u>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	제1조(목적) ----- <u>남한과 북한</u> <u>의 협력을 바탕으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7조(<u>남북인권대화의 추진</u>) ① 정부는 <u>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.</u>	제7조(<u>남북인권협력사업의 추진</u>) ① ---- <u>남북인권협력을 위하여</u> <u>다음 각 호의 사업(이하 이 조에서 “남북인권협력사업”이라 한다)을</u> -----.
<u><신 설></u>	<u>1. 남북인권대화</u>
<u><신 설></u>	<u>2. 남북인권협력 관련 남북 공동 조사·연구</u>
<u><신 설></u>	<u>3. 그 밖에 남북인권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</u>
② <u>남북인권대화의 대표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「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15조를 준용한다.</u>	② <u>남북인권협력사업 중 남북인권대화</u> ----- ----- -----.

③ 그 밖에 남북인권대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(북한인권재단의 설립) ①

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② (생략)

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,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담당기구를 둘 수 있다.

1. 남북인권대화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
가.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·연구

나. 남북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

다.·라. (생략)

2.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

③ 남북인권협력사업의-----

-----.

제10조(남북인권협력재단의 설립)

① -----남북인권협력의 추진 실태-----

-----남북인권협력-----

-----남북인권협력재단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1. -----남북인권협력-----

가. 남북인권협력의 추진 실태-----

나. 남북인권협력-----

다.·라. (현행과 같음)

2. 인도적 지원, 개발협력 등 남북인권협력-----

가.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
요에 관한 조사·연구

나.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
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
부 건의

다.·라. (생략)

④ (생략)

<신설>

가. -----인도적 지원 및
개발협력 수요-----

나.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개
발협력-----

다.·라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2조의2(결격사유) ① 다음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
람은 위원회의 위원 및 재단의
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사람

2.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재단의
임원의 직에서 해촉 또는 해
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
니한 사람

3. 이 법 또는 「남북교류협력
에 관한 법률」, 「남북관계
발전에 관한 법률」, 「남북
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
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
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
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
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

<u><신 설></u>	<u>나지 아니한 사람</u> ② <u>위원회의 위원 또는 재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.</u> ③ <u>제2항에 따라 퇴직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재단의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</u> <u>제12조의3(벌금형의 분리 선고)</u> <u>「형법」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위원 및 재단의 임원에게 제12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(競合犯)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.</u>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